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3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 정기명 인

여수시 조례 제1864호

붙임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864호

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·일·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공공심야어린이병원"이란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·일·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·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, 지정 방법과 절차,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2. 토·일·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3.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

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「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5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·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「의료법」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
3.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7조(보조금 관리)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

아니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